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학생예술인 정의 신설 및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99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학생예술인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                                                             | 3  |
| 2. 예술교육 관련 규율 대상 확대 및 학생예술인 인권 보호 체계 마련<br>(안 제2조제5호, 제2조제7호의2 신설, 제13조, 제34조 및 제38조) .... | 9  |
| 3. 학생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전담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5조의2<br>신설 및 제21조제5항) .....                          | 2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4.

다. 회 부 일 : 2025. 12.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학생 예술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예술인이 법률상의 정의에는 포함되지만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 성인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예술인이 수업·입시·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의 범위에 초·중·고 및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 등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 나.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교습소를 포함하고, 예술교육기관도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명령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34조 및 제38조).
- 다.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 라. 불공정행위의 금지 대상자로 예술교육자를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의 대상으로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3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바. 위원회에 학생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 Ⅲ. 검토의견

#### 1. 학생예술인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개정안은 예술인의 정의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생략)<br>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br>가. (생략)<br>나. <u>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u> | 제2조(정의) -----<br>-----.<br>1. (현행과 같음)<br>2. -----<br>----.<br>가. (현행과 같음)<br>나. <u>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u><br>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br>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활동과 관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3. 4. (생략)</p> | <p> <u>러던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u><br/> <u>다.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u> </p> <p>3. 4. (현행과 같음)</p> |

현행법 제2조<sup>1)</sup>는 “예술인”을 이미 예술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2조제2호는 예술인을 ①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적 예술인(가목)과, ②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나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이른바 “학생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예술인” 또는 “예비 예술인”까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조제2호나목은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조<sup>2)</sup>는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교육·훈련의 주체를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법령 체계는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

---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승교육학교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 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상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주체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예술 전공 학교에 진학을 준비하는 상당수의 학생이 대학이나 특성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영역에서 장기간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교육 단계의 “학생예술인”이 현행 법령상 “예술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은 “학생예술인”을 법률상 “예술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학생예술인을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의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예술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그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무형유산 전승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비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인을 포함하는 입법 체계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체계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예술인의 범위를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특정 교육·훈련 주체 중심으로 한정하여 열거할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예술인 유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무형유산 전승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비 인력 등의 예술인 유형이 개정 이후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예술인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계속 규정하거나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일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예술인이 학원·교습소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규율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학원·교습소는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예술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지, 학원·교습소 설립의 본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예술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한편,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학원·교습소의 학습자는 사적 계약 관계에 기반하므로 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 발생 우려 및 예술 목적 학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법적 해석의 오해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sup>3)</sup>은 개정안과 같이 학생예술인의 범위를 학원 및 교습소 학습자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연령이나 전공 여부 등 대상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계와의 충돌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

3)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 예술교육 관련 규율 대상 확대 및 학생예술인 인권 보호 체계 마련 (안 제2조제5호, 제2조제7호의2 신설, 제13조, 제34조 및 제38조)

개정안은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5호),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아울러, 예술교육자를 불공정행위 금지의 주체로 포함하고,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예술교육활동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며(안 제13조),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적용 대상에 예술교육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8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 |
| <신 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신 설>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신 설>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6.·7. (생략)</p> <p><u>&lt;신설&gt;</u></p> <p>8. ~ 10. (생략)</p> <p>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br/>보호와 <u>증진</u></p> <p>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u>예술지원기관</u>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② 국가기관등, <u>예술지원기관</u>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p> | <p><u>호에 따른 학원</u></p> <p>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p> <p>6.·7. (현행과 같음)</p> <p>7의2. “예술교육자”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학생예술인”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말한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br/>보호와 <u>증진 등</u></p> <p>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br/>-----<u>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자</u>-----<br/>-----<br/>-----<br/>-----<br/>-----<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u>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u></p> <p>5. (현행과 같음)</p> <p>② -----<u>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자</u>-----</p> |

| 현행                                                                                                                                                                                                                                                                                             | 개정안                                                                                                                                                           |
|------------------------------------------------------------------------------------------------------------------------------------------------------------------------------------------------------------------------------------------------------------------------------------------------|---------------------------------------------------------------------------------------------------------------------------------------------------------------|
| 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br>-----.                                                                                                                                               |
|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 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u>예술지원기관</u> 또는 <u>예술사업자에</u>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4조(시정명령) ① -----<br>-----<br>-----<br>-----<br>----- <u>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u> -----<br>-----<br>-----.<br>-----<br>-----<br>-----<br>-----<br>-----.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예술지원기관</u> 또는 <u>예술사업자에</u> 의한 예술 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u>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u> -----<br>-----<br>-----<br>-----.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② (생략)                                                                                                                                                                                                                                                                        |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 등, <u>예술지원기관</u> ,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③ -----<br>-----<br><u>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u> -----<br>-----                                                                                                      |

| 현행                                                                                       | 개정안                                        |
|------------------------------------------------------------------------------------------|--------------------------------------------|
|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br>-----<br>-----<br>-----<br>-----.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조제5호4)는 “예술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만을 예술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현행법상 예술교육기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예술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 제2조제3호<sup>5)</sup>는 “예술교육활동”을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이나 권리·의무 주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3조<sup>6)</sup>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sup>7)</sup> 및 예술사업자<sup>8)</sup>를 불공정행위의 주체로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규정하고, 이들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예술인의 직업적 활동 과정이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행위를 직접적인 불공정행위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아울러,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sup>9)</sup>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

---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다. 제9조를 위반한 행위
- 라.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마.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34조), 예술교육기관을 포함한 누구든지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8조)<sup>10)</sup>.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1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그러나,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은 주로 직업적 예술인의 활동 과정이나 성희롱·성폭력 등 특정 유형의 침해로 전제로 한 것으로, 학생예술인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예술교육기관이나 교육자 개인을 직접적인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예술교육기관”의 범위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예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교육자”로 정의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이 실제로 교육을 받는 주요 교육 공간과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예술교육 관련 규율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안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7호의2 신설).

이는 예술교육이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예술계 학교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예술인의 상당수가 장기간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 지도 형태의 교육·훈련을 받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예술교육자를 현행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13조).

이는 기존 불공정행위 규율이 주로 직업적 예술인의 계약 관계나 활동 과정에서의 침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권리 침해 역시 실질적인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더 나아가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예술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예술교육기관에 대하여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4조 및 제38조).

이는 단순한 선언적 권리 규정에 그치지 않고, 침해 발생 시 행정적 조치 수단까지 연계함으로써 학생예술인 권리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학생예술인이 실제로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권력 관계를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보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학생예술인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 제2조제7호의2<sup>11)</sup>는 “예술교육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안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학생예술인”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나목<sup>12)</sup>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의미함.

이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훈련을 받았던 사람, 즉 “졸업생”도 “학생예술인”에 포함되는바, 이미 교육·훈련을 마친 졸업생을 일반예술인이 아닌 “학생

---

1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제221559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예술교육자”란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학생예술인”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 등을 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제2215599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일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원·교습소 강사 등 예술교육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적용 대상 특정이 곤란하며,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금지를 예술활동 계약·거래를 규율하는 현행법에 포함하는 것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은 이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으로 보호되고 있어, 개정시 중복 규제와 법 적용 혼선, 처분의 형평성 및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교육부는 학생예술인 및 예술교육자에 대한 명료한 법적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예술에 관한 전문성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을 교육·훈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교육자로 규정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임.

이 경우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기존 예술교육자와 비전문 교육자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관련 종사자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학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sup>13)</sup>은 학원 및 교습소는 이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사교육 영역이므로, 이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충돌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예술교육자”의 범위에 학원 강사와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할 경우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질 수 있으며,

학생 인권은 이미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다수의 교육 관계 법령을 통해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보호 체계를 중첩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중복 및 책임 주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13)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 학생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전담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5항)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 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의2 신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항).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15조의2(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학생 예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u>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u> | ⑤ -----<br>-----<br>----- <u>분과위원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및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를</u><br>-----.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sup>14)</sup>은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15조제2항제3호), 2년마다 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제19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 규정은 예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조사에 해당할 뿐, 학생예술인을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체계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1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로 인해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문제는 개별 사건이나 민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조사·대응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예술인의 특성과 교육·훈련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나 분석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학생예술인의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진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에 신고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학생예술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조사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사교육 영역을 포괄하는 실태조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20조<sup>15)</sup>는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예술 활동 또는 예

1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술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의 처리,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요청, 분쟁 조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1조16)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위원회가 주로 직업적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어 온 점을 보완하여, 학생 예술인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학생예술인 관련 사안이 기존 분과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심의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일부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예술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교육 영역까지 포함될 경우 조사 대상 특징이 어려우며, 이미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생 인권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어 별도 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위원회는 이미 전문성을 갖춘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예술인만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부는 개정안에 명시된 예술인과 학생예술인의 법적 명료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되므로 현행 법<sup>17)</sup>의 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일부 시·도교육청<sup>18)</sup>은 학생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등록 및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와 학원, 개인과외교습까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행과 같이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8)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 문 의 처        |
| 02)6788-5384 |